

# 직원 보수 규정 개정(안) 심의서

## 1. 규정 개정 취지

□ 대학 내 별도의 규정들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들도 총괄적인 사항으로서 보수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의 최근 감사 경향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

## 2. 개정 주요 내용(주요 골자)

구분	개정 주요 내용
제6조 (보수체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6조 4 제 수당</li> <li>- 명절 수당, 포상 수당,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 신설</li> <li>- 제 수당 위계를 고려하여 수당 항목 재 배열</li> </ul>
제14조 (특별승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14조(특별승호)</li> <li>- 직원인사규정에 맞추어 문구 정정(특별승호를 포함하여 -&gt; 특별승호는)</li> </ul>
제28조 (제 수당 산출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28조</li> <li>- 명절 수당, 포상 수당,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 산출 기준 신설</li> <li>- 제 수당 위계를 고려하여 수당 항목 재 배열</li> </ul>
표3 (제수당, 상여금 및 정근수당 지급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표3의 2 보직수당</li> <li>- 현재 학교의 직제를 기준으로 보직명 삭제 및 추가 (‘통합관리단장 등’ 삭제, 정보지원센터장 삭제, 학생상담센터장 추가, 인권센터장 추가, 학과장 -&gt; 학과장(전공주임) 변경)</li> <li>· 표3의 5 책임수당</li> <li>- 법적 기준에 의해 관공서에 선임된 자격 수당 추가 (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자, 전기안전관리자, 승강기안전관리자 등)</li> </ul>
시행일	· 2026년 00월 00일부터 적용

## 3. 신규대조표

현행	개정(안)
<p><b>제6조(보수체계)</b></p> <p>4. 제 수당</p> <p>가. 보직수당 : 보직에 보임기간 지급되는 수당이다.</p> <p>나. 책임수당 : 일정한 업무 또는 지정된 상황에 책임을 지는 직무에 지급하는 수당이다.</p> <p>다. 위험 및 특수부서 수당 : 부서업무 내용상 다른 부서보다 과중하고 근무여건이 어려운 직무에 지급하는 수당이다.</p> <p>라. 가족수당 : 부양가족(배우자 및 자녀)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.</p> <p>마. 급량비 : 직원의 중식 및 특수부서 근무시 급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.</p> <p>바. 기타수당 : 총장의 결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 가능한 별도의 수당이다.</p> <p>사. 장기근속수당 :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.</p> <p>아. 차량보조비: 차량비 보조로 지급되는 수당이다.</p> <p>자. 가계보조수당 : 가계보조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.</p> <p>차. 자녀학자금: 직원 자녀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지급하며,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.</p>	<p><b>제6조(보수체계)</b></p> <p>4. 제 수당</p> <p>가 ~ 마. 현행과 동일</p> <p>바. 장기근속수당 : 내용은 현행과 동일</p> <p>사. 차량보조비: 내용은 현행과 동일</p> <p>아. 가계보조수당 : 내용은 현행과 동일</p> <p>자. 자녀학자금: 내용은 현행과 동일</p> <p>차. 명절수당 : 명절에 년 2회(설, 추석)에 지급되는 수당이다. &lt;신설 2026. 0. 0.&gt;</p> <p>카. 포상수당 :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학내 다양한 표창(장기근속표창, 공적표창, 공로상 등)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(상품 포함)을 말하며,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 &lt;신설 2026. 0. 0.&gt;</p> <p>타.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 : 대학의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자진 퇴직하는 자(명예퇴직)와 대학의 직원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 중에서 자진 퇴직하는 자(희망퇴직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&lt;신설 2026. 0. 0.&gt;</p> <p>파. 기타수당 : 내용은 현행과 동일</p>

현행	개정(안)
<p><b>제14조(특별승호)</b> 직원인사규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특별승호한다. 다만, 특별승호를 포함하여 연간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<b>제14조(특별승호)</b> 직원인사규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특별승호한다. 다만, 특별승호는 연간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.</p>
<p><b>제28조(제 수당 산출기준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직수당 : 보직자의 보직수당은 ‘표3의 2. 보직수당’에 의함</li> <li>2. 책임수당 : ‘표3의 5. 책임수당’에 의함</li> <li>3. 가족수당 : 매년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직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‘표3의3. 가족수당’에 의함. (단,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(학교법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.)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교직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지급한다. &lt;개정 2022. 2. 11.&gt;</li> <li>4. 급량비 : 매년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‘표3의 4. 급량비’에 의함</li> <li>5. 장기근속수당 : 제30조에 따라 ‘표3의 8. 장기근속수당’에 의함</li> <li>6. 차량보조비 : 매년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‘표3의 6. 차량보조비’에 의함(新設)</li> <li>7. 가계보조수당 : 매년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‘표3의 7. 가계보조수당’에 의함(新設)</li> <li>8.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,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</li> <li>9. 기타수당 : 모든 수당은 규정에 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, 특별한 사유의 발생 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총장의 결재를 얻어 별도로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li> </ol> <p>보수계산은 당월 1일 기산하여 당월 말일 마감한다.</p>	<p><b>제28조(제 수당 산출기준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~ 8. 현행과 동일</li> <li>9. 명절수당 : ‘표3의 9. 명절수당’에 의함&lt;신설 2026. 0. 0.&gt;</li> <li>10. 포상수당 :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교직원 포상 규정」에 의함. &lt;신설 2026. 0. 0.&gt;</li> <li>11.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 :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규정」에 의함. &lt;신설 2026. 0. 0.&gt;</li> <li>12. 기타수당 : 내용은 현행과 동일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2. 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</li> </ol>